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위원회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

1.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

분 야	인 원	자 격 기 준
자동차보험심사위원	1명	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자로서, 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

※ 수행업무 등은 [별첨1]직무기술서 참고

공통 자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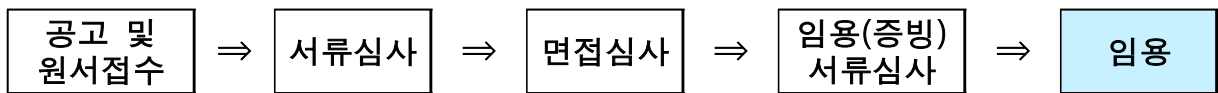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- 「병역법」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군필, 미필, 면제 등 지원 가능
- 임용(예정)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우리원은 2026년 퇴직공직자 “취업심사 대상기관”으로, 해당자는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반드시 확인
- 우리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 결격사유[붙임1]에 해당하지 않는 자

2. 근무조건 등

- 임기: 2년
- 근무형태: 주 5일 상근
- 근무지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(원주)*
 * 임용 후 인력운영 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 등은 변동될 수 있음
- 보수: 연봉으로 정하여 매월 평균액을 지급
 ※ 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우리원 「보수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운영세칙」 범위 내에서 정함

3.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

전형절차



채용일정

구 분	예정 일정	비 고
공고 및 원서접수	· 4. 8.(수) ~ 4. 22.(수) 18시	·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
서류심사	· 4. 29.(수) ~ 5. 1.(금) 중 예정	-
서류심사 결과발표	· 5. 4.(월) 17시 이후	· 채용 홈페이지 발표
증빙서류 제출	· 5. 4.(월) ~ 5. 6.(수) 18시	· 채용 홈페이지
면접심사	· 5. 6.(수) ~ 5. 12.(화) 중 예정	· 원주 심평원 본원 또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등
최종합격자 발표	· 5. 18.(월) 17시 이후	· 채용 홈페이지 발표
임용서류 제출	· 5. 18.(월) ~ 5. 20.(수) 18시	· 채용 홈페이지
임용(증빙)서류 검토	· 5. 20.(수) ~ 5. 26.(화)	-
임 용	· 6. 1.(월) 예정	-

※ 상기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(홈페이지 공지 예정)

4. 우대사항

분 야	항 목	자 격 기 준	가 산 점
사회 형평적 채용	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취업지원)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(취업지원)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*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※ 단,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)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(채용예정인원 무관) 	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% 또는 10%
	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*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	면접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 (경증: 5%, 중증: 10%)
	의사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취업보호)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	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3% 또는 5%

분 야	항 목	자 격 기 준	가 산 점
사회 형평적 채용	기초생활 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수급자 *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	면접전형 취득점수의 3%
	다문화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자 	
	북한이탈 주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보호대상자 	
	한부모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	
	자립준비 청년 (보호종료아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*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'청년'에 한해 적용 	
다자녀 양육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		

- ※ 합격자결정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
- ※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('26. 4. 22.)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.
- ※ 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,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

5.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

기간: 4. 8.(수)~4. 22.(수) 18시

방법: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hira.recruitlab.co.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(방문 또는 이메일·우편접수 불가)

<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안내 >

- ◆ 우리원은 「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여 지원서의 사진, 학교명, 연령, 성별, 가족관계, 출신지를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, **응시자는 지원서(자기소개서포함)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별, 연령, 학교, 가족관계, 출신지 등)이나,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를 금하며, 관련정보를 노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(성명,기관(부서)명,직위 담당업무,학과(전공)명은 블라인드 처리 없이 제출)
- ◆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게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6. 서류심사

- 대상: 입사지원서 접수자 전원
- 심사기준: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
- 결과발표
 - 일시: 5. 4.(월) 17시 이후
 - 방법: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hira.recruitlab.co.kr>) 발표
 - 내용: 서류심사 합격여부 및 면접심사 관련 사항 안내

7. 증빙서류 제출

- 대상: 면접심사 응시자 * 증빙서류 목록 [붙임2] 참조
- 기간: 5. 4.(월)~5. 6.(수) 18시
- 방법: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hira.recruitlab.co.kr>) 제출
(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)
- 유의사항
 -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,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
※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며,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 -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(발급 유효기간)에 맞게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, 블라인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 처리하여 제출
※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는 블라인드 처리하되, 응시자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필수 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
 -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8. 면접심사

- 대상: 서류심사 합격자
- 일정: 5. 6.(수)~5. 12.(화) 중 예정
- 장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회의실 또는 국제전자센터(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) 회의실 등
- 방법: 다대일 집중면접(심층면접, 인성면접 통합)을 통해 직무역량, 조직 적합성,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9. 임용서류 제출

- 대상: 면접심사 합격자
- 기간: 5. 18.(월)~5. 20.(수) 18시
- 방법: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hira.recruitlab.co.kr>) 제출

10. 기타사항

-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
-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
 - ※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
- 입사지원서 기재착오, 누락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, 우리원 규정에 따라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

-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) 지참 시 응시 가능함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2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)에 따라 사전요청 시 면접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이 가능함
 -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신청 사항을 작성해야 함
 - ※ [별첨2] ‘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’ 참조
 - 이후 면접시험 응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 장애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
-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(증빙) 서류 허위·착오기재, 임용결격사유,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(증빙)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
- 임용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는 임용(예정)일부터 근무 가능해야함
- 우리원 규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,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
 - 다만, 채용 홈페이지 등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, 반환 요청 기한이 지난 서류는 파기함

-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이의제기 할 수 있음
(단, 평가기준,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등은 처리대상 제외)
- 신청기간: 2026. 5. 18.(월)~6. 1.(월)
- 접수방법: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hira.recruitlab.co.kr>) - 채용문의 - Q&A
- 처리안내: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신청내용 검토 후 개인별 답변 송부

<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>

-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
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)와 관련한 사항
- 지적재산권(외부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
-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※ 전형별 평가기준, 개인별 취득점수(순위)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함

- 기관 사정 및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(일정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)
※ 수신차단, 스팸설정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기타문의사항 : ☎ 02-3275-2581 ※ 평일 오전 9시 30분 ~ 오후 6시

2026. 4. 8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붙임1 **임용 결격사유** [우리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]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6의4.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붙임2	증빙서류 목록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구분	제출 서류	제출 대상	발급 유효기간
자격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사 면허증 사본 ▪ 전문의(세부전문의) 자격증 사본 	지원자 전원	기한없음
경력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(근무기간 명시) ※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발급(홈택스 발급) ※ 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▪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(①, ② 필수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¹⁾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²⁾ ② 소득금액증명³⁾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p>[발급처] 1) 근로복지공단 2) 국민건강보험공단 3) 국세청</p> </div>	경력사항 입력자 (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기간이 증빙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력증명서 - 기한 없음 ▪ 재직증명서 - '26.4.22.(수) ~ '26.5.6.(수) '26.4.22.(수) ~ '26.5.6.(수)
사회 형평적 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제출처 '건강보험심사평가원'으로 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, 제대군인 확인서 등 ▪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중증장애인은 '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'를 함께 제출 ▪ 의사상자 증명서 (본인명의로 발급) (제출처 '건강보험심사평가원'으로 발급) ▪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본인명의로 발급) 	취업지원 대상 해당자 장애인 해당자 의사상자 등 해당자 기초생활수급 해당자	'26.4.22.(수) ~ '26.5.6.(수)

구분	제출 서류	제출 대상	발급 유효기간
사회 형평적 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(2가지 필수 제출) - 지원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기본증명서¹⁾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²⁾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1)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또는 본인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 기준 발급 2) 부모가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	다문화가족 해당자	'26.4.22.(수) ~ '26.5.6.(수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(본인명의로 발급) 	북한이탈주민 해당자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부모가족 증명서 (본인명의로 발급) 	한부모가족 해당자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보호종료확인서, 시설 퇴소 증빙서류,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	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 해당자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자녀양육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	다자녀양육자 해당자	
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, 개명사항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성: 필수 제출 여성: 개명자 또는 군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	'26.4.22.(수) ~ '26.5.6.(수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	해당자에 한함	

* 발급유효기간, 제출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잘못된 서류제출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